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      | 제 호                |
| 의 결<br>연 월 일 | 2023. . .<br>(제 회) |

|      |  |
|------|--|
| 의결사항 |  |
|------|--|

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
| 제 출 자 | 고 성 군 수     |
| 제출연월일 | 2023. 9. 1. |

#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제 호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: 2023. 9. 1.

제 출 자: 고성군수

## 1. 폐지이유

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현 정부 및 민선 8기 고성군의 대북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고려할 때 지자체 차원의 대북 관련 사업 전개 가능성이 없는 등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며, 조례 폐지를 통하여 현재 가입 중인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절차를 진행하고, 고성군 남북교류협력기금 또한 폐지하여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고성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일반회계 전입 조치(201,607천원)

다. 합 의

- 복지지원과(성별영향평가)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3-1245호

가) 예고기간: 2023. 7. 25. ~ 2023. 8. 14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신·구조문대비표: 해당사항 없음

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#### 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조례 제 호

##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고성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반 회계에 세입 조치한다.

##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재정수반요인

- 고성군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에 따른 세입예상액 201,607천원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1호
 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- 해당 폐지조례안에 따른 고성군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로 예상되는 세입액이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작성자: 행정과장 최낙창

**□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**

(제정) 2020.10.12 조례 제2579호

(일부개정) 2021.07.05 조례 제2652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, 고성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설치) ① 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군의 출연금
2. 기금의 운용 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③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군과 주민(법인·단체를 포함한다)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
2.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및 문화·학술·체육·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
3.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사업과 관련한 군 지원 사업
4. 기금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
5. 그 밖에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

제4조(기금의 운용 관리)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·관리하되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.

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·변경에 관한 사항
2.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기금의 회계공무원)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: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부서장
2. 기금출납원: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주사

제6조(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기금의 운용·관리 및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남북교류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·조정
2.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
3. 기금의 조성·운용·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21.07.05. 조2652>

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국장,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1.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
2.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·단체에 근무하는 사람
4.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공무원인 경우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질병,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1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·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관계인이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 심의·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·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2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3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4조(예산지원)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(지도 및 감독)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·감독을 하며, 필요한 경우 사업운영 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<2020.10.12. 조2579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1.07.05. 조2652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